

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2003. 4. 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의 안 번 호	2003-15
------------	---------

1. 개정이유

지방세 감면조례안의 개정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감면대상 사업의 감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에서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 삭제
-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했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을 유지
-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서 2002년 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2005년 12월 31일로 3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법인등의 지방이전 유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2003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
- 나. 예산조치 : 부
- 다. 협의 등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2)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: 부
3) 입법예고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6조중 “유료노인복지시설”을 “노인복지시설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%를 경감한다”를 “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중 “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”를 “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”로 한다.

제19조중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”를 “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중 “2002년12월31일”을 “2005년12월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(안)
<p>제6조(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노인복지법에 의한 <u>유료노인복지시설</u>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<u>유료노인복지시설</u>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.</p>	<p>제6조(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) ----- ----- <u>노인복지시설</u> ----- -----<u>노인복지시설</u>-----</p>
<p>제9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① (생략) ② <u>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</u>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<u>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%를 경감한다.</u></p>	<p>제9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 <u>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.</u></p>
<p>제12조(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<u>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</u>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<u>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</u>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(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. 다만,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2조(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----- ----- --- <u>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